

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안내문

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본 단지 「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」 후 실제 청약 시 더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
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일정 및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

구분	일시	방법	장소
특별공급 청약 신청	3월 07일(월)	인터넷 청약 (PC 또는 스마트폰) (09:00 ~ 17:3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PC : 한국부동산원 '청약 Home' (www.applyhome.co.kr) • 스마트폰 : '청약홈' 어플리케이션 사용
당첨자 서류 제출	3월 21일(월) ~ 23일(수) 10:00 ~ 17:30	건보주택 접수 (변경 시 별도 유선 또는 문자안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건보주택 :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50

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

구분	84A	84B	합계
노부모부양 특별공급	2	1	3

■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

구분	상세내용
신청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,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(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)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(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.) ※ 단,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 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- 세대주일 것 -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※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 및 그 배우자, 피부양자(노부모)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(«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»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) ※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※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(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)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※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(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) ※ 기타 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안내문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「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-269호(2018. 5. 8.)에 따름
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(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) 거주자가 우선함.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. -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'청약가점 산정기준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별표1)'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. -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,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,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. -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(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)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,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,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